## 가상자산 트래블를 제도에 관하여

농협은행 준법감시인

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이 시행되었습니다. 임직원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

<u>트래블룰은</u> 원래, 은행 간 자금이체 시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상을 기록해 두는 제도로서 수신인이 제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금 이전을 사전에 차 단하는 기능도 합니다.

<u>주된 목적은</u>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, 바꿔 말하면 자금추적을 쉽게하기 위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국제간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제도입니다.

<u>가상자산이 출현하기 전</u>, 자금 이동은 대부분 은행 간 계좌를 통해서 이루 어졌으므로 <u>은행 간 트래블룰 제도는 나름 중요한 기능</u>을 해 왔습니다.

그런데, <u>가상자산이 출현한 이후에는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</u>를 제도가 <u>훨씬 더 중요</u>해지게 되었습니다. <u>그 이유</u>는 (i) 은행 계좌에는 매우 강한 금융실명제가 강제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부분적인 <u>실명제</u>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, (ii) 일반 통화는 개인지갑 개념이 없지만, 가상자산은 <u>개인지갑</u>이 있다는 점, (iii) 일반 통화는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되어 국경을 넘기어렵지만, 가상자산은 <u>외국환거래법</u>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.

좀 부연하고 <u>비유하자면</u>, 자금 이전의 <u>입구에서는 은행 실명확인계좌 등을</u>통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, 자금 이전의 <u>출구에서는 개인지갑의 존재</u>등으로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, 비록 <u>실명제는 아니지만</u>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아무튼, <u>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트래블룰 제도는 상당한 한계</u>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, 특히, 트래블룰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면 가상자산의 이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, 이를 완화하게 되면, 그만큼 국제간 자금세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

국내의 경우 현재 <u>두 개의 트래블룰 방식(코드 vs 람다)</u>이 존재하는데,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입출입 경로 제한 및 개인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의 일종이어서 복수의 방식이 존재해서는 안 되므로 이른 시일 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(업계에서 계속 논의 중).

상기한 대로 트래블룰 제도는 거래소 고객(은행 고객이기도 함)의 개인식 별정보를 주고받는 제도이므로 <u>개인정보 유출이나 국제간 해킹 사고의 위</u> 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는 <u>FATF도 크게 주목</u>하는 부분이고 <u>당행도 계속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</u>이기도 합니다.